

#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년월일 199 . . .  
제 출 자 삼 척 시 장

##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별표 1)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확대
  - 식품접객업소 민적기준을 객식민적에서 객식과 객실민적 포함
  -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포함
  - 공중접객업소 중 숙박업소 객실기준을 30실에서 7실로 확대
- 규제대상 1회용품의 품목확대
  - 1회용 광고선전물 포함 - 비닐코팅 또는 첩합된 종이 사용억제

## 3.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

삼척시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의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친보자기등)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하는 쓰레기 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50이상 100미만	50이상 100미만	50이상 100미만
	라.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이상 200미만	100이상 200미만	100이상 200미만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 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다량배출 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반폐기 물 처리업자는 제외)	200이상 500미만	200이상 500미만	200이상 500미만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 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3.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 중 시의 조례 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 은 자(법 제17조제4항)	300	500	1,000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4.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300	500	1,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계의개선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퍼센트미만 초과한 때 (2) 기준보다 25퍼센트이상 50퍼센트 초과한 때 (3) 기준보다 50퍼센트이상 초과한 때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3) 기준보다 3회를 더 포장한 때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집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000 2,500  1,000 1,500 2,000 2,000  2,000	2,000 2,500 3,000  1,500 2,000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마.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인차민 감량화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2,000	2,500	3,000
	<p>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2,000	2,500	3,000
	<p>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인도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2,000	2,500	3,000
	<p>아.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2,000	2,500	3,000
	<p>2. 회용품의 사용자재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p>			
	<p>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민적이</p>	1,000	2,0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주)
	<p>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p>	<p>1,500</p> <p>300</p>	<p>2,500</p> <p>500</p>	<p>3,000</p> <p>1,000</p>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인 건물의 소유자·집유자 또는 권리 자	300	500	1,000
	나. 다량매출자로서 면적이 1천㎡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집유자 또는 권리자	800	900	1,000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진 리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신·구조조문대비표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전		행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폐기물관리법	1-4 <생략>		<생략>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원회용 촉진법	1. 가-라 <생략>		<생략>			1. 가-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마.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되는 수입하는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인 건물의 소유자·집유자 또는 관리 자	300	500	1,000
	나. 다량매출자로서 면적이 1천㎡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집유자 또는 관리자	300	900	1,000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정				안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 위 반	2 위 반	3 차 위 반 (이후)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이후)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4 <생략>		<생략>		폐기물관리법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원활용에 적합한물 출판법	1. 가-라 <생략>		<생략>		자원활용에 적합한물 출판법	1. 가-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00	2,500	3,000
	<신설>					마. 식품류, 잡화류, 종합 제품의 제조포는 수입 하는자가 합성수지 재 질의 포장재의 감량화 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원		행				개				정				안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마.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광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p> <p>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의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광화 기준위반에 대한</p>	2,000	2,500	3,000		<p>바.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광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p> <p>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광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제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p>											
						<p>바.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광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p> <p>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광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제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p>											

현		행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u>니한때</u> 사. <생략>					니한때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천원)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이후)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이후)
	<p>2.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p> <p>가. 객석면적이 33㎡ 이상 66㎡미만의 식품점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1,000	2,000	3,000	2.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p>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이상 66㎡미만의 식품점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p>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p>나. 객석면적이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 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1,500	2,500	3,000		<p>선진물의 제작, 배포의 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p> <p>나. 식품위생법 제21의 규정 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 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 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 지로 도포(코팅) 또는 칩 합(라미네이션)된 1회용</p>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신설>					광고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 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 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500	1,000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범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u>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u> 여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디키탱,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u>객실이 30실이상이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u> 여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종객실이 7실이상이인 숙박업소에서 -----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업업	1,500	2,500	3,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500	3,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백화점·대형점·도매센 타 및 소평센타에서 1회 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1,000	2,500	3,000	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 형점·도매센타, 소평센 타 및 매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 품 사용억제 및 합성수 지로 도포(코팅)또는 철 합 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억제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2차 3차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바.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소평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함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사용 제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현행과 같음>				
	사. 백화점에서 재사용 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현		행			개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 신설 >					아.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 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 소매업 (백화점·대형점. 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 정용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금융 업, 보험 및 연금업, 증 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금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1,000	2,000	3,000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생략>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전선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2 <생략>

비고 : 1-2 <현행과 같음>